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6년 귀속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공시의 건

본 재단의 2016년 귀속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공시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보고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 래 -

1. 공익법인 결산공시 관련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첨 부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부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1부
 3.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서 1부
 4.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부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1부
 6. 대차대조표 1부
 7. 손익계산서 1부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접수증 1부. 끝.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담당 박소연

사무국장 전결
송연숙

협조자

시행 서울장학재단-273 (2017. 4. 28) 접수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304(운니동, 가든타워) / <http://www.hissf.or.kr>

전화 070-8667-3506 / 전송 070-4133-2258 / soy0503@naver.com / 부분공개(5)